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1. 9. 14 규정 제251호

개정 2022. 1. 25 규정 제2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1. 2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임직원, 비정규직,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에너지사업단은 자체 지침을 수립·운영한다. <개정 2022. 01. 25>

② 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는 공사 「안전관리지침」을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 중 공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관계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④ 공사를 방문하거나 공사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25>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상태(常態))를 의미한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

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보통 실무적으로는 일정 사업기간 내(1년 이상인 경우 1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기간을 말한다)의 근로자 연 인원수(1년 이내인 경우 전체 인원수)를 일정 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과 파견근로자를 합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안전작업허가”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운전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5. “도급(都給)사업”이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 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가 있다.
6.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안전경영책임계획”이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사가 수립해야 하는 계

획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수칙 준수 등 중대재해 예방, 사망사고 제로화, 입주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매년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매년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01. 25]

제5조(재해예방 의무) 공사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사의 사장과 전 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

가. 법과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이행

마. 지속적으로 공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며,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조치 이행 <개정 2022. 01. 2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장이 직접 또는 사장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안전보건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며, 공사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교육, 사고조

사 등 법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안전보건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4. 관리감독자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5. 근로자 : 제2조제1항의 모든 근로자는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장 및 그 밖에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공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 공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하며, 도급사업의 범위와 대상사업은 법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공사는 제6조에 따른 도급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③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공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

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작업환경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②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1. 25>

③ 그 밖에 도급사업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22. 01. 25>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9조(안전보건조직) ① 사장은 공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라인조직, 스텝조직 및 기타조직으로 구성한다.

③ 라인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담당부서원으로 한다.

⑤ 기타조직은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조직으로 한다.

⑥ 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사는 사장, 지역(특별)본부·토지주택연구원·에너지사업단 등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예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본사, 지역본부, 사업본부 등 해당 부서의 부장급 등에서 매년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련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공사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안전관

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7. 법에서 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8. 법에서 정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점검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에 따른 필요한 조치
10.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

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안전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공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에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⑧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공사는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이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7. 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지도·조언
-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에 한함)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공사는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공사가 선임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 ⑥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공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과 보건관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⑦ 공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 ⑧ 공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보건의를)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

③ 공사가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공사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15조(기타 안전관리자) ① 공사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직무에 관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공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 규정과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공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법과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이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 위원회의 설치대상은 법에 따른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공사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산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산업보건의

5. 그 밖에 사용자 대표가 지명하는 공사 임직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안전보건담당부서의 부장 또는 해당 업무 담당자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가. 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요청 및 작성

나.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 배포

다. 위원장에게 주요안전 상정

라.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활동) ① 위원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각각 지명변경 시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석시간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소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며, 위원들에 대하여 활동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 소집 및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분명하게 적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의제 등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운영부서에 추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위원인 안전·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조언

2. 직업병 또는 직업별 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3.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

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

6. 이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7. 그 밖에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20조(회의 결과 등의 처리)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사는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③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공사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사내방송
2.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 게시
3. 공사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21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에 대한 신의 성실의 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근로협의체) ① 공사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는 공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며, 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측 대표 : 현장 최고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노측 대표 : 하청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시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한다.

제24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25조(작업지휘자) ① 공사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공사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공사는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제10조의 해당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시키는 결정
2. 법 제64조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4.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발파작업, 화재발생 및 토석의 붕괴사고 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8.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9.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제2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① 공사는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사업 시 수급인 사업주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수급업체가 요청할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인 공사가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2.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4. 합동안전점검실시 및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5.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6. 수급업체 간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방안
7. 위험성평가표에 대한 업무분장 및 시정조치
8. 잠재위험 요인 발굴 및 대책 수립
9. 안전장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8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 등 그 밖에 관련법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③ 안전보건교육은 공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공사 내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 ⑥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2.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3. 관리감독자 : 매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공사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에서 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해당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이 조에서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제28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그 화학물질의 취급·운반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34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기타 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3. 기타 안전관리자

가. 승강기안전관리자 : 신규 4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3년 주기로 재교육)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 강습교육 24시간, 실무교육 2년마다 8시간

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신규교육 8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2년마다 보수교육 4시간)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공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기록·보존) 각 부서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37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및 실행) ①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공공기관 지침 제6조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확정하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제3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공공기관 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본사 안전관리 총괄부서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실행) ① 본사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분기에 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한다.

② 본사 안전보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안전보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발표 시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공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가 대여하는 경우

가. 해당 기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나. 해당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 1) 해당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 2) 해당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 3)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 4) 해당 기계 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 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다. 해당 기계 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가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가 대여받은 경우

가. 공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 2)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것

나. 공사가 기계 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 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41조(전기설비 안전) ① 공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 ② 공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4.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판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④ 공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공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⑦ 공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중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제42조(승강기 안전) ① 공사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공사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제43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공사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법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때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법 제85조에서 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계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아니한다.

제44조(안전검사) ① 공사는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사 소유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경우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해당 부서에서는 부록 1에 따른 위험인자별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6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공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공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공사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④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47조(작업 중지) ①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게시) ① 공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49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공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공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을 위한 계단 및 통로에 장애물 적재 여부
10.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⑨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0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작업장 내 화재·폭발을 일으

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화기작업 이외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화기작업이나 일반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보충작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④ 공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⑤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작업 시 작업담당부서는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법 제4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청(또는 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52조(교통재해 예방) ① 공사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공사 임직원 등은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53조(비상조치계획) ① 공사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비상조치계획은 공사의 재난·방재 등 조치계획과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4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공사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계획(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피난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대응체계를 운영 및 교육하여야 한다.

제55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공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56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

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 법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내포털에 게시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 공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⑨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가. 사무직(판매직 제외) : 2년에 1회 이상

나. 그 밖의 근로자(판매직 및 생산직) : 1년 1회 이상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5)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6) 그 밖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른다.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건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건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4) 그 밖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
3.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 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나. 배치전건강진단 제외사유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 (1) 배치전건강진단
 - (2)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3)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4.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실시
5.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에게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을 받은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과 검진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규에 따른

다.

⑤ 안전보건담당부서(보건관리자 등)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공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또는 해당분야 의사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공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증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그 밖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에 따른다.

제5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

회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제정·시행하며, 해당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⑤ 해당 근로자는 공사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공사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사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공사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임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안전·보건에 저해함이 없어야 한다.

②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 등은 사규에 따른다.

제61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① 공사는 법 제140조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제한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이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근로시간 연장제한) ① 공사는 법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부사항은 법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공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애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 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애 등과 관련된 질병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6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공사는 법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공사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비치하거나,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공사는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65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공사는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제12장 규정에 따라 매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라목 및 제6호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② 유해요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며, 공사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자
2. 보건관리자
3. 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4. 유해요인조사 교육을 받은 자

③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개선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선계획수립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문서는 5년 동안 보존하며, 제3호는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1.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3. 개선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66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 ② 직무스트레스 및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다.

제67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산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등 취약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건강증진센터 등 설치·운영) ① 공사는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사 및 지역·사업본부 등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시 필요한 시설, 예산,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69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공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고, 본사 및 지역본부 등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70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 담당 임원(또는 부서장)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사장(직무대행을 포함)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사장(직무대행을 포함)에게 보고한다.
-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71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장(직무대행을 포함)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년 2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다발원인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72조(위험성평가 시행) ① 공사는 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 2(위험성평가 실시기준)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③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공사의 「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73조(무재해운동) 공사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 시행 요령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무재해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4조(안전보건제안제도) ①공사는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

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안전보건제안제도 운영 시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포상) ① 공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사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포상대상자 선정은 추천·선발 등을 통해 본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장에게 추천 한다.

제76조(징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77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다만, 제3호, 제8호의 경우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일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는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 이행에 관한 서류는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01.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2. 01. 25>

제78조(변경절차) ①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작성·변경한 규정은 사내포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9조(준수)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

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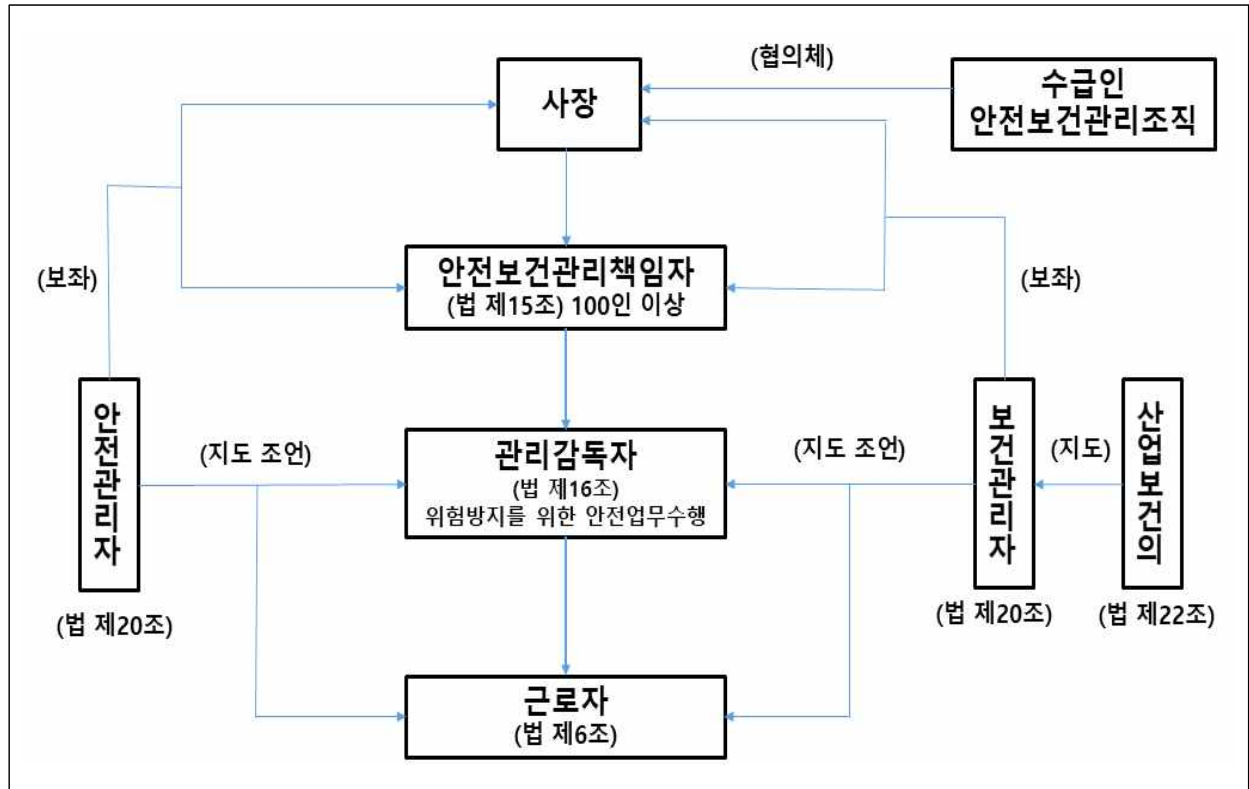
제2조(관련 지침의 폐지) 「안전보건관리지침」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2022. 1. 25>

이 규정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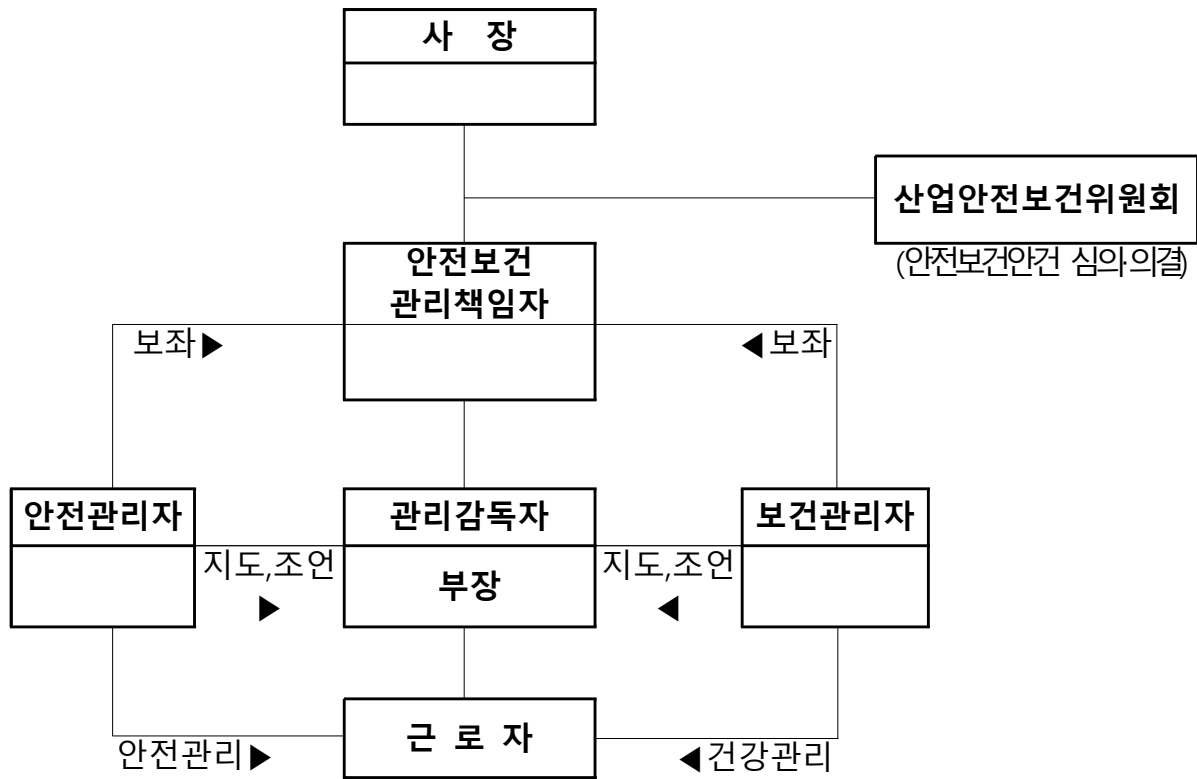
[별표 1] (제7조 관련)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별표 2] (제9조 관련)

안전보건관리조직 기구표



표준작업안전수칙

1. 안전의 기본요소

1. 육체를 건강하게 마음을 명랑하게 할 것
2. 서로 믿고 협력할 것
3. 지시나 수칙은 정확히 지키도록 할 것
4. 복장 및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
5. 정리정돈을 제일로 알고 실천할 것
6. 기계나 기구는 잘 보관하고 사용할 것
7. 작업은 올바른 순서대로 할 것
8. 신호와 연락은 확실하게 할 것
9. 모르는 일은 항상 물어보고 할 것
10. 무리나 태만은 사고의 원인으로 알고 금할 것

2. 안전에 대한 원칙

1. 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2. 관리감독자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3. 안전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4.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5. 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6.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
7.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는 매우중요하다.
8. 업무 후의 안전은 업무 중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9.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10.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3. 직장안전의 10포인트

1.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게 할 것
2. 보호구 착용 시 바르게 몸에 착용할 것
3. 작업 전 주위 정리정돈 및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것
4. 안전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
5. 스위치는 신호에 따른 작동확인을 할 것
6. 안전장치를 제멋대로 제거하지 않을 것
7. 물품을 공동으로 운반 시 항시 소리를 맞추고 행할 것
8. 기계·공구는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할 것
9.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밴드로 고정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0. 물건 적재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으로 할 것

4. 일반 안전수칙

1.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정해진 안전 보호구를 착용할 것
2. 시설 및 작업용 기계, 공구는 점검 후 사용할 것
3. 직장 내 정리, 정돈, 청소에 유의하며 주위환경을 항상 정리할 것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엄금할 것
5.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 외 무단출입을 금지할 것
6.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며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7. 모든 기계, 공구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할 것
8. 음주 후 작업을 금하며 음주자 발견 시 책임자에게 연락할 것
9. 현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될것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할 것
11. 기계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등을 하지 않을 것
12.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할 것
13. 책상, 캐비넷 등은 사용 후 서랍을 꼭 닫도록 할 것
14. 동료의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한 때는 주의를 줄 것
15. 출퇴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항상 주의할 것

5. 작업장 안전수칙

1. 일은 질서있게 하는 습관을 가질 것
2. 작업시 장난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지 말 것
3. 바닥의 유해·위험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4. 공구, 기타 물품을 자신의 키높이 이상의 위에서 던지지 말 것
5. 위에서 작업시는 밑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 것
6. 자기 작업지역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7. 작업중에는 자기의 숙련을 믿고 방심하지 말 것
8. 모든 안전수칙과 표지를 준수할 것
9. 요행을 바라지 말 것
10. 작업중에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경거망동 하지 말 것
11. 공동작업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할 것
12. 무리한 작업은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3. 교대 시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할 것

6. 정리정돈 안전수칙

1. 불필요한 것이 눈에 떨어 때 즉시 정리정돈 할 것
2.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정돈 할 것
3. 주위 통로나 작업장내의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고 작업을 행할 것
4. 소화전, 화재 및 비상·안전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르게 부착 할 것
5. 넘어지기 쉬운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묶어서 적재·보관 할 것
6.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 것을 밑에 쌓지 않을 것
7. 부식성, 인화성 물질은 별도로 보관 할 것
8.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좋도록 정리정돈 할 것
9. 정리정돈이 잘된 곳이 재해 없는 안전한 곳이란 것을 명심 할 것

7. 창고관리 안전수칙

1. 물건을 쌓을 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 할 것
2. 뽕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 할 것
3. 가연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4. 물품 옥외 저장 시 받침대를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을 것
5. 드럼통을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출 것
6. 높이 올려쌓은 물건은 쌓아서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할 것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 것
8. 가늘고 긴 물체는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을 것
9. 물건을 한 줄로 높이 쌓지 말 것
10. 물품 운반시에는 운반 작업수칙을 필히 준수 할 것
11. 가연성물질은 별도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할 것

8. 통행 안전수칙

1. 작업장 내 통행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할 것
2.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붙잡고 우측통행할 것
3. 높은 곳이나 책상, 계단 등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
4. 통로를 보행할 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심할 것.
5. 움직이는 차량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것
6. 통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치우는 습관을 가질 것
7. 통제구역이나 지름길을 허가 없이 다니지 않을 것
8. 보행 통로를 이용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함부로 뛰지 않을 것
9. 출입문등을 열고 닫을 시 천천히 할 것
10. 작업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통행하지 않을 것
11. 부득이 밑으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할 것

9. 공동작업 안전수칙

1. 작업 전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작업신호에 따라 작업할 것
2. 작업장에는 경광등을 설치하여 주변 접근을 통제할 것
3. 작업시 2개소 이상 동시작업을 절대 하지 않을 것
4. 작업전 작업신호를 반드시 정할 것
5. 작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6.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 대로 작업할 것
7. 작업시 사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할 것
8. 작업중 교대시에는 작업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할 것
9. 작업 후 조작하기 전에 주변의 작업자를 반드시 확인할 것
10. 중량물 취급시는 작업신호나 연락을 정확히 하고 호흡을 맞출 것.
11. 작업장 주변은 항상 청소, 청결을 유지할 것

10. 단독작업 안전수칙

1. 단독작업시 작업자의 독립작업 수행능력과 체력을 고려할 것
2. 작업구역내에는 통신시설을 구비할 것
3. 관리자는 통상 2시간 간격으로 작업자를 관찰할 것
4. 임시 단독작업시에는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할 것
5. 임시 단독작업자는 그 관리자가 연락인을 지정할 것
6. 단독작업의 해당구역은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작업이 이루어질 것

11. 중량물 취급작업 안전수칙

1. 작업계획서의 작성·준수

- 작업지휘자 임명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취급방법 및 순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2. 작업지휘자의 의무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관계 근로자 이외 출입을 금지 시킬 것
-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 정비할 것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 조정을 행할 것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작업자의 의무

-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것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추어 할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12. 사다리작업 안전수칙

1.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말 것
2. 사다리는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꼭 점검할 것
3. 견고한 구로조 하며 2인 1조로 작업할 것
4. 손을 잡을 때와 발을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할 것
5.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할 것
6.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말 것
7. 오르기 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고 올라갈 때는 두 손을 사용 할 것
8. 사다리를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주의 표지를 붙이거나 방호울을 쳐둘 것
9. 수시로 사다리의 부식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할 것

13. 응급처치

재해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것
2. 급한 환자부터 순서적으로 처치할 것
3.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관계자에게 알릴 것
4. 부상의 정도 및 일반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
5. 부상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6. 환자의 체온유지에 힘쓸 것
8. 심신이 안정되도록 도울 것
9.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 지혈, 기도유지, 상처보호, 쇼크예방 및 치료
10. 사고발생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 침착하고 냉정하게, 재빨리 재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할 것
 - 재해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을 것
 - 재해자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것
 - 신속히 의사에게 연락할 것

14. 보호구 착용수칙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작업시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할 것
3.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곳에서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
4. 회전하는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자는 장갑을 착용하지 말 것
5. 비산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6. 화공약품 취급작업 시 보안경, 내산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7.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차광안경을 착용할 것
8. 충전선로를 점검 및 수리하는 자는 절연안전모,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 고무토시를 착용할 것
9. 수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15. 유해·위험작업 안전수칙

1. 관리감독자는 작업시작 전에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것
2. 유해·위험작업장에는 작업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3. 작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두지 말 것
4. 유해·위험장소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할 것
5. 유해·위험작업장에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6. 작업장 바닥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을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8. 출입이 금지된 작업장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것
9. 고소작업 시 밑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 것
10. 교대시에는 작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자세하게 인수·인계할 것
11.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16. 유해물질 안전수칙

1. 유해물질은 소정의 장소, 용기에 보관할 것
2.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할 것
3. 취급관계자 이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할 것
4. 작업장 내에서는 담배, 음식을 금할 것
5. 식사전에는 손을 깨끗이 닦을 것
6. 적절한 보호구나 방호장치를 사용할 것
7. 작업장의 통풍·환기에는 항상 주의 할 것
8. 신체에 이상을 느끼면 바로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9.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을 것

17. 유기용제 안전수칙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유기용제 작업시 증기 발산원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작업할 것
4.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을 피하고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할 것
5. 국소배기장치 설치시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발산원 가까이 설치할 것
6. 유기용제를 옥내에 저장할 때에는 누출이 없도록 할 것
7.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8. 빈 용기 중 증기발산 우려 시 밀폐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18. 차량운행 안전수칙

1.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점검표 등의 유무를 확인할 것
2. 고장 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3. 음주를 절대 금하고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안전운행이 되도록 할 것
4. 통행인의 우선권을 지키고 과속운전을 금할 것
5. 교통규칙을 엄수함은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를 금할 것
6. 신호나 지시를 엄수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 말 것
7. 과속, 일단정지 이행 등 안전표지 내용을 준수할 것
8. 통행할 때는 오토나 오수 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없도록 할 것
9.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해 확실히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운전을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정비해 둘 것
11. 출발 전 전후 측면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나 앉는지 확인할 것
12.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할 것
13. 교통상황, 차량의 구조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할 것
14. 좁은 도로 혹은 경사진 도로에서 교차할 때 빈차가 도로 우측으로 피할 것

위험성평가 실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 사업장 업무 전반의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잠재된 위험요소 및 문제점을 발견, 평가, 개선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을 포함한 제반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공사 「안전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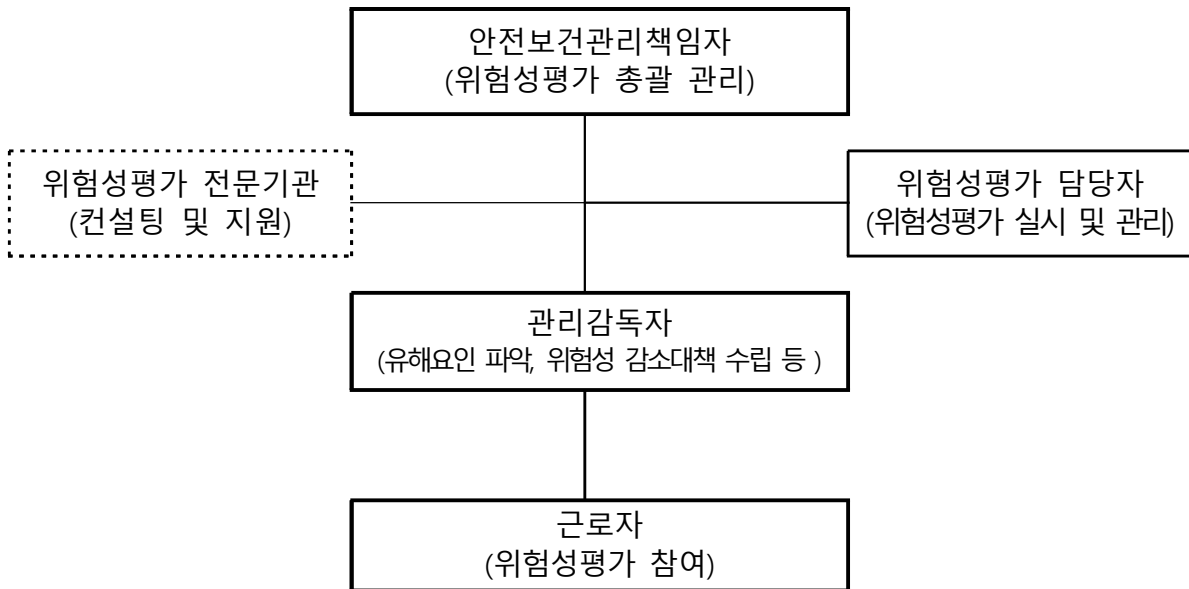
1.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 및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방법으로서 노사 협력적 자율안전보건 활동체계를 말한다.
2. “유해·위험요인(Hazard)”이란 부상(신체적 상해) 또는 질병(건강장해)을 유발하는 잠재적 근원(원인), 즉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기계·설비,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요인, 인적 요인 등도 포함된다.
3. “위험성(Risk)”이란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으로서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4. “유해·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이란 시스템에서 인적·물적 손실 및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를 가진 물리·화학적 여러 요인을 확인(도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재 안전조치”란 기존의 예방대책이 수립된 상태 및 방호조치가 된 상태를 말한다.
6. “개선대책(해결방안)”이란 위험성평가로부터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되어 수행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한다.

제2장 실시체제

제4조 (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제5조 (관계자의 역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수립 및 결과의 승인
2.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3. 사업장 차원에서의 위험성 감소조치에 관한 최종 결정 등 위험성평가 실시의 총괄 관리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2.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3.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및 이행지도

③ 위험성평가 실행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실행
2.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3.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④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차사고정보, 위험예지정보 등 위험요소 발굴 및 제공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등 위험성평가 참여
3. 위험성 감소조치 및 잔류위험성에의 대응조치의 준수
4. 위험성 감소조치 실시 후의 정보제공 등

제3장 구분 및 시기

제6조 (구분 및 시기) ①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평가 :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설립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2.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장의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가.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다.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라.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3. 수시평가 : 수시평가는 다음 각 목의 해당 계획에 대한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마. 중대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바. 그 밖에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기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변화가 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제4장 교육

제7조 (교육대상)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

감독자 및 유해·위험 해당 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실시 방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외부교육기관으로부터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위험성평가실행담당자 및 실시자는 사내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거나 외부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③ 사내 교육은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등을 작성하여 실시하거나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9조 (관계서류 보존) 위험성평가 교육실시 결과는 별도로 기록·작성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험성평가

제10조 (평가절차)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Hazard identification) (☞부록별표 2 참조)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Risk estimation) (☞부록별표 3 참조)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지 여부의 결정(Risk evaluation) (☞부록별표 4 참조)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Risk reduction)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11조 (사전준비) ①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위험성평가의 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모든 위험요소를 식별하여야 한다.
2. 단위 작업별로 평가하되 여러 개의 단위 작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2가지 이상의 작업이라도 동일한 장소, 방법인 경우 통합 실시하여 중복을 배제할 수 있다.

4. 작업장소의 이동 및 작업준비에 따른 위험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업무에 관계되는 위험성이 상정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작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작업

3. 중대 아차사고가 발생한 사례

4.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작업

5. 과거에 사고가 있었던 설비 등의 조작

6. 조작이 복잡한 기계·설비의 조작

7. 설비와 작업의 관점에서 재해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

④ 위험성평가 시범실시 대상부서 선정 시 위험성이 많은 작업장(과거에 부상 또는 질병이 많이 발생한 작업장 또는 아차사고 보고가 많은 작업장)을 선정한다.

⑤ 과거 재해가 없을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곳에 잠재된 재해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장 또는 부서 중 몇 군데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⑥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⑦ 위험성평가 수행여부가 결정되면 평가실행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평가 일정·장소에 대하여 평가책임자와 협의한다.

⑧ 평가실행담당자는 사업장에서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 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⑨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제12조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부록별지 제1호서식)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부록별지 제2호서식)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부록별지 제3호서식)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부록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3조 (위험성의 추정) 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부록별지 제5호서식)
2.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14조 (위험성의 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 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부록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부록별표 4의 표와 같다.

제15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제14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부록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체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지침 정비 등의 관리적 대체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 중대 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행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실시방법) ①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가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참여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혹은 외부전문가 참여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관리

제17조 (기록의 작성·관리) 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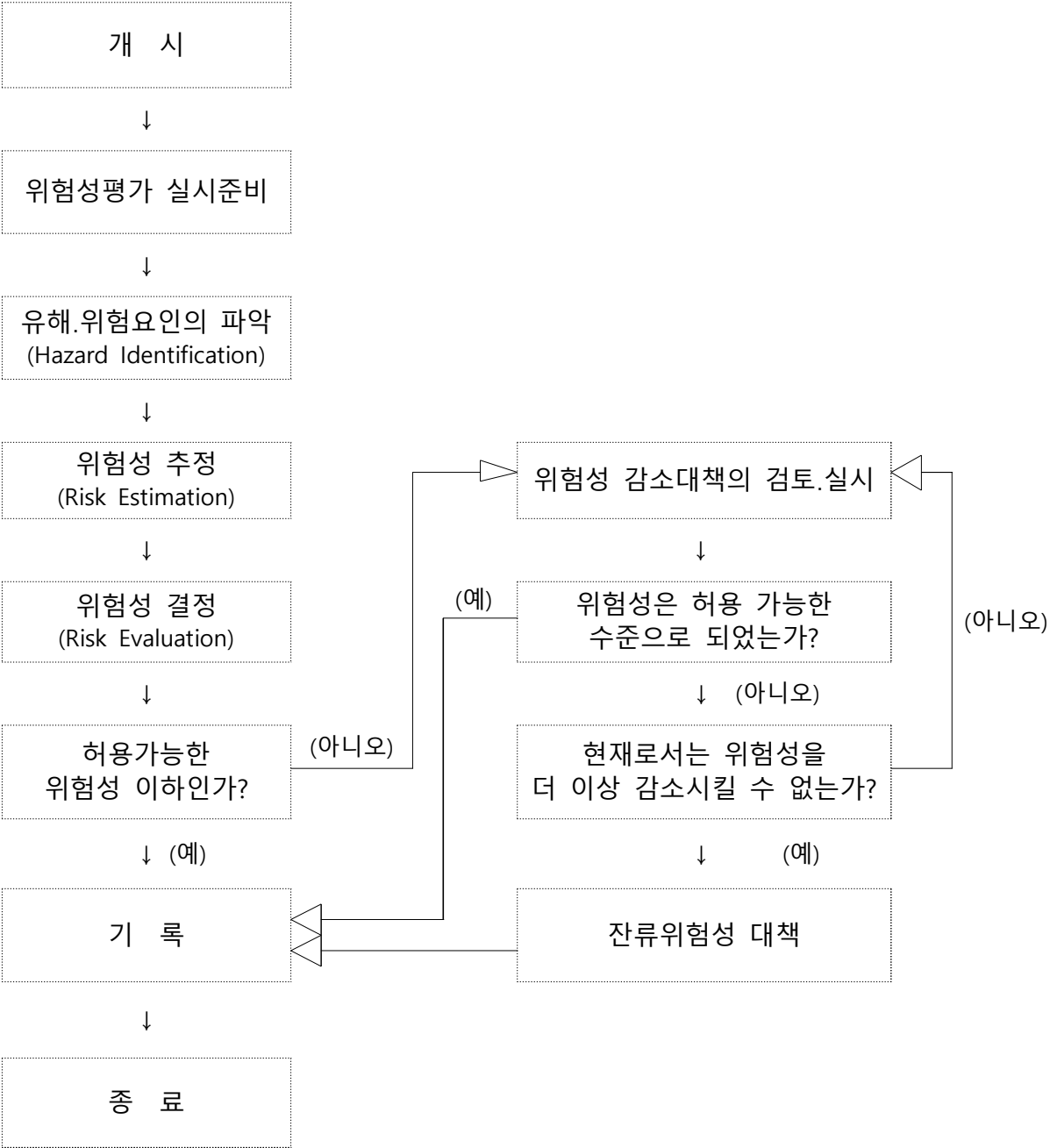
③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전 부서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검토 및 수정)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효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수정하여야 한다.

1. 도입목적,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의 향상, 사회의 가치관, 사회의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경우
2.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이 기준의 검토·수정은 위험성평가책임자, 실행자 등으로부터의 의견, 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실시 흐름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1)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가)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기구 및 설비나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
 -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아차사고)와 질병의 기록
 -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의 기록
 - 유해·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한 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 점검자는 사업장 근무환경 및 업무 등을 사전에 파악할 것
 - 측정에 필요한 경우 계측기 등을 준비할 것
 -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를 조정할 것
 - 점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할 것

(나)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청취조사의 실시준비
 - 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 현재의 작업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사람
 -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 청취조사 실시상의 유의사항
 - 청취조사는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사표를 사용
 -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경험)에 기초
 -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 청취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의 비밀 보호
 -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다)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안전보건자료의 종류
 - 안전보건위원회 등의 회의록 또는 기록
 -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 실시 결과
 - 기타 안전보건 활동 기록 등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 시 유의사항
 -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 것
 -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의 작성
 - 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 특히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선정
 -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위험요인을 기재

(2) 위 방법 외에도 사업장에 적합한 다른 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험성의 추정

1. 가능성과 중대성

(1) 가능성(빈도)의 추정

- 피해(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그 크기를 추정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그 단계를 정할 수 있다.
- 가능성 추정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5	◦ (발생빈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도 없음 ◦ (노출기준)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 ◦ (작업빈도) 초과 근무(1일 8시간 이상)
상	4	◦ (발생빈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있지만 미미하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잘못되어 있음 ◦ (노출기준)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75% 초과 ~ 100% 이하 ◦ (작업빈도) 계속(1일 4시간 이상)
중	3	◦ (발생빈도)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노출기준)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75% 이하 ◦ (작업빈도) 자주(1일 4시간 미만)
하	2	◦ (발생빈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노출기준)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 (작업빈도) 가끔(하루 또는 주 2~3일)
최하	1	◦ (발생빈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대책과 안전장치, 안전수칙등이 잘 정비되어 피해의 가능성이 없음 ◦ (노출기준)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이하 ◦ (작업빈도) 3개월 마다(년 2~3회)

※ 작업빈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제5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평가함

(2) 중대성의 추정

- 중대성의 크기 추정은 다음과 같고,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중대성 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 중대성 추정

《부상 또는 질병의 강도》

구 분	중대성(강도)		내 용
최대	사망(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업무복귀 불가능),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대	휴업 필요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질병 (일정시점에서 업무복귀 가능(완치가능))
중	휴업 불필요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질병
소	치료 불필요	1	처치(치료) 후 즉시 본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질병(업무에 지장 없음)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기본적으로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고 시설 및 장비 등 물적 손실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음

《노출기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구 분	중대성 (유해성)	노출기준	
		발생형태 : 분진(mg/m ³)	발생형태 : 증기(ppm)
최대	4	0.01 mg/m ³ 이하	0.5 ppm
대	3	0.01~0.1 mg/m ³ 이하	0.5~5 ppm
중	2	0.1~1 mg/m ³ 이하	5~50 ppm
소	1	1~10 mg/m ³ 이하	50~500 ppm

※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발생형태(분진, 증기)에 따라 노출기준을 적용하여 유해성을 결정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작업부하》

구 분	중대성 (작업부하)	내 용	분류기준	
			Borg's scale*	심박수
최대	4	매우 힘들	16 등급 이상	160 이상
대	3	힘들	14~15 등급	140~150
중	2	쉬움	10~13 등급	100~130
소	1	매우 쉬움	6~9 등급	90 이하

※ Borg's Scale : 작업부하를 근로자가 지각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부하(또는 활동지수)에 따른 심박수 변화와의 연관성(상관계수=0.88)을 근거로 개발한 범주형 비율척도

2. 위험성 추정방법

□ 곱셈법

- 곱셈법은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한 뒤, 이것을 곱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이다.
 - 위험성(부상질병) = 발생빈도 × 강도
 - 위험성(화학물질) = 노출수준 × 유해성
 - 위험성(근골격계) = 작업빈도 × 작업부하
- 위험성 추정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중대성 (강도, 유해성, 작업부하)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단계	4	3	2	1
최상	5	매우 높음 (20)	높음 (15)	약간 높음 (10)	낮음 (5)
상	4	매우 높음 (16)	약간 높음 (12)	보통 (8)	낮음(4)
중	3	약간 높음 (12)	약간 높음 (9)	낮음 (6)	매우 낮음 (3)
하	2	보통 (8)	낮음 (6)	낮음 (4)	매우 낮음 (2)
최하	1	낮음 (4)	매우 낮음 (3)	매우 낮음 (2)	매우 낮음 (1)

- 소음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노출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험성을 추정한다.

《소음의 위험성 추정》

위험성 구분	매우 높음(4)	높음(3)	보통(2)	낮음(1)
작업환경 측정결과	95dB(A) 이상	90dB(A) 이상~ 95dB(A) 미만	85dB(A) 이상~ 90dB(A) 미만	80dB(A) 이상~ 85dB(A) 미만

위험성의 결정

- 위험성 결정은 추정된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일 만한(Acceptable)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Tolerable)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결과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자의적인 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결정)되면, 잔류 위험성(Residual risk)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명기하고 종료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한 수준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조치(대책)를 수립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곱셈식에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 ~ 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 ~ 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소음의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4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3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3	보통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부록별지 제1호서식] (제12조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실시 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 수행자 성명 : ○ 수 행 일 시 :		
유해.위험작업 (1) (2) (3) (4) ※발견한 작업의 내용, 장소 및 유해.위험정도를 표시함		사고, 질병의 유형 ※ 파악한 작업의 결과, 발생시 의 사고 또는 질병형태 표시
사고의 유형 ① 끼임.감김 ② 떨어짐, 넘어짐 ③ 감전 ④ 화재.폭발 ⑤ 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부록별지 제2호서식] (제12조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청취조사 방식)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 요인을 조사
○ 수행자 성명 :	○ 근로자 소속 :
○ 수 행 일 시 :	○ 근로자 성명 :
유해 . 위험작업(경험담)	
(경험담1)	
(경험담2)	
(경험담3)	
(경험담4)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	
근로자 의견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	수행자의 의견 (경험에 대한 조언)

[부록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식)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재해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실시결과, 아차사고 등 안전보건자료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조사
○ 수행자 성명 : ○ 수 행 일 시 :	

자료의 종류	발생일시	유해.위험작업
(1) 재해조사보고서		

자료의 종류	실시일시	관리구분	유해인자의 종류
(2)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종류	실시일시	관리구분	건강진단의 종류
(3) 건강진단			

※ 건강진단 실시결과는 질병 유소견자(D1-직업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를 중심으로 파악

자료의 종류	경험일시	유해.위험작업
(4) 아차사고 보고		

[부록별지 제4호서식] (제12조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조사표(안전보건체크리스트에 의한 방식)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 . 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체크리스트 조사표를 작성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조사
○ 수행자 성명 : ○ 수 행 일 시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부록별지 제5호서식] (제13조 관련)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서식

곱셈식에 의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표																																																					
실시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한 수치를 곱셈에 의해 위험성을 구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함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위험성 추정 = 가능성 × 중대																																																					
<가능성(빈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가능성</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최상</td> <td>매우 높음</td> <td>5</td> <td>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td> </tr> <tr> <td>상</td> <td>높음</td> <td>4</td> <td>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td> </tr> <tr> <td>중</td> <td>보통</td> <td>3</td> <td>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td> </tr> <tr> <td>하</td> <td>낮음</td> <td>2</td> <td>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td> </tr> <tr> <td>최하</td> <td>매우 낮음</td> <td>1</td> <td>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td> </tr> </tbody> </table> <중대성(강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중대성</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최대</td> <td>사망</td> <td>4</td> <td>사망재해</td> </tr> <tr> <td>대</td> <td>장해발생</td> <td>3</td> <td>휴업 1월 이상인 재해</td> </tr> <tr> <td>중</td> <td>병원치료</td> <td>2</td> <td>휴업 1월 미만인 재해</td> </tr> <tr> <td>소</td> <td>비치료</td> <td>1</td> <td>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td> </tr> </tbody> </table>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구분	가능성		내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구분	중대성		내용																																																		
최대	사망	4	사망재해																																																		
대	장해발생	3	휴업 1월 이상인 재해																																																		
중	병원치료	2	휴업 1월 미만인 재해																																																		
소	비치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현재 상태 유지																																															

[부록별지 제6호서식] 작성예시 (제14조 관련)

평가서 NO	00본부 1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평가팀)	홍길동 (노사협력처)	
평가대상	00사옥 (옥상)								
평가일시	2020.01.01	관리부서: 경영지원부	현재 위험도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개선자 (개선팀)	아안전 (노사협력처)		
		관리사업:	16~20(매우 높음), 15(높음), 9~12(약간 높음), 8(보통), 4~6(낮음), 1~3(매우 낮음)						
작업내용 (장소)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 안전조치	현재위험도			개선대책	개선일	확인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도				
옥상	소화기 지정된 위치에 보관 및 표지 부착관리	-	3	3	9	-	-	-	
옥상	소화기 관리상태(월1회이상 점검관리)	-	3	2	6	-	-	-	
옥상	소화기 사용법 상태(교육실시)	-	2	1	2	-	-	-	
옥상	피난유도등 부착 및 작동상태	-	3	3	9	-	-	-	
옥상	이동 통로상 장애물 등 충돌위험	-	3	2	6	-	-	-	

[부록별지 제7호서식] 작성예시 (제15조 관련)

평가서 NO	00본부 1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서					평가자 (평가팀)	홍길동 (경영지원부)	
평가대상	00사옥 (옥상)								
평가일시	2020.00.00	관리부서: 경영지원부	현재 위험도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개선자 (개선팀)	이안전 (경영지원부)	
		관리사업:	16~20(매우 높음), 15(높음), 9~12(약간 높음), 8(보통), 4~6(낮음), 1~3(매우 낮음)						
작업내용 (장소)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 안전조치	현재위험도			개선대책	개선일	확인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도				
옥상	소화기 위치 및 활용 상태 불량으로 화재 시 소화작업 불가	-	4	3	12	1.소화기는 정해진 위치에 보관 2.문 고정을 위한 받침대 사용	2020. 11.30	김팀장	
옥상	소화기 분말이 굳어 화재 시 작동 불량	-	3	3	9	1.매월 정기점검 실시 2.분말 상태 확인	2020. 11.30	김팀장	
옥상	피난구유도등 작동 상태 불량	-	3	3	9	1.점검스위치 활용하여 점검 실시 2.피난구유도등 내부 전구 교체	2020. 11.30	김팀장	
옥상	대피로 주변 이동식 안내판에 부딪힘 위험	-	3	3	9	대피로 주변 정리정돈 실시	2020. 11.30	김팀장	

평가서 NO	00본부 1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서					평가자 (평가팀)	홍길동 (경영지원부)	
평가대상	00사옥 (옥상)								
평가일시	2018.01.01	관리부서: 경영지원부	현재 위험도 =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개선자 (개선팀)	이안전 (경영지원부)	
		관리사업:	상 : 15~25, 중 : 12 하 : 8~10, 미약 : 1~7						
작업내용 (장소)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 안전조치	현재위험도			개선대책	개선일	확인자
			가능성	중대성	위험도				
옥상	소화기 위치 및 활용 상태 불량으로 화재 시 소화작업 불가		-	4	3	12 (중)	1,소화기는 정해진 위치에 보관 2,문 고정을 위한 받침대 사용	2015. 11,30	김팀장
옥상	소화기 분말이 굳어 화재 시 작동 불량		-	3	4	12 (중)	1,매월 정기점검 실시 2,분말 상태 확인	2015. 12,15	김팀장
옥상	피난구유도등 작동 상태 불량		-	4	3	12 (중)	1,점검스위치 활용하여 점검 실시 2,피난구유도등 내부 전구 교체	2015. 11,30	김팀장
옥상	대피로 주변 이동식 안내판에 부딪힘 위험		-	4	3	12 (중)	대피로 주변 정리정돈 실시	2015. 12,30	김팀장